

學校給食 現況과 改善方向

朴 煉 教

防峴中學校

The Status of School Food Service Program and its Improvement Proposal in Korea

Park, June-Kyo
A-Hyun Middle School

學校給食 現況

가. 學校給食의 意義 및 必要性

學校給食은 成長期에 있는 兒童들의 成長發達에 必要한 영양공급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心身의 發達을 도모하고, 舒適合理的인 食生活 영위에 必要한 기초營養지식의 理解 및 올바른 食生活 습관 形成을 위하여 學校에서 일정한 指導目標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集團給食으로 定義된다.

學校給食의 意義와 必要性은 여러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目的에 비추어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 健全한 成長發達圖謀로 인한 健康增進 및 體位向上에 그 必要性과 意義를 들 수 있다.

成長期의 兒童에게 균형된 식사를 시범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편식을 교정하여 좋은 食性을 지니도록 하여 질병 발생을 저하시키자는 것이다. 한편 身長·體重 등 成長의 극대화를 기하여 體格·體質의 개선으로 國民體位의 根幹을 構築하고 나아가 國民健康增進 및 體位向上에 이바지하게 한다.

둘째 教育的 意義로서 觀戰教師 級友와 더불어 동일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아울러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단급식 시간을 통

여 일부 아동의 열등의식을 배제하고 아동 상호간의 개방된 사교를 통하여 社會性을 길러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결석생 감소를 전반적인 學習環境改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第1次의 ‘善’인 元賤의 生命權 유지에 있어 먹는 행위와 差等意識을 抑制함으로써 人權의 同等과 相互要亨意識 所續感 培養으로 共同體意識(一體感)을 啓發시켜 民主市民意識과 資質를 함양시키고 師弟間의 誼, 級友間의 友愛 돈독으로 바른 人間關係를 함양하는 道德的 人性과 實踐力を 培養하는 教育의 場이 된다. 또한 주변정리정돈, 질서지키기, 분단활동, 식사예절 급식당번활동 위생관리 및 食生活習慣 態度 등 基本生活 習慣을 함양 할 수 있다. 끝으로 全生活 측면에서 바람직한 食性함양과 아울러 食品의 營養價 및 機能을 理解 하므로써 均衡的 營養攝取의 生活化를 通過今理的 食生活 영위를 익히는 營養教育의 場이 된다.

셋째로는 현대 산업화 시대가 요청하는 集團給食에의 適應 및 善導적 역할의 의의이다. 學校給食의 식단표 배부, 조리참여, 영양 교육 기회 확대로 學生뿐만 아니라 學校, 지역사회에 영양지식, 위생관리 등을 보급하는 國民營養教育의 道具가 되며, 食糧消費의 合理化로 식량 수급 정책에 기여하고 國民食生活改善과 國民營養 증진에 기여하는 면에서 社會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나. 學校給食의 目的 및 目標

學校給食法에 따르면 法 第1條에 ‘學校給食을 통한 學生의 心身의 健全한 發達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食生活改善에 기여함’에 目的의 있다고 明示하고 法 第3條에는 ‘營養教育을 通한 食習慣의 改善’에 目的을 두고 있다.

학교급식 실시의 基本的 目標는 成長期 兒童들의 부적당한 영양상태를 감소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成長發達을 촉진함에 있고, 그 長期的 目標는 보다 좋은 食習慣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영양상태를 改善시키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健全한 成長發達을 도모함은 물론 食糧消費合理화와 食生活 改善을 가능하게 하여 國家의 食糧消費合理화 및 食糧需給에 원활을 기하게 하여 國가의 食糧事情 改善에 공헌하는데 두고 있다.

다. 우리나라 學校給食의 變遷

우리나라 學校給食은 6.25이후 經濟事情이 어려운 시기인 1953년에 戰災兒童의 救護給食을 위하여 國際兒童會(UNICEF) 世界民間救護協會(CARE), 美國國際開發處(USAID) 등의 기관이 지원하는 檳穀(脫脂粉乳를 비롯한 옥수수가루, 食油, 小麥粉등)으로 國民學校 兒童에게 無償給食을 實施한 것이 그 始初이다.

그후 1972년까지 약 20年間 外國援助에 의한 救護의 形態로 給食이 實施되었으며 1973년에 이르러 外援에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부담에 의한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自立形態의 급식으로 비로소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후 지금까지 약 37년간의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变천과정을 살펴보면 救護給食期(1953~1972년), 自立給食期(1973~1977년), 制度確立期(1978~1982년), 給食管理體系轉換期(1982~1989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救護給食期(1953~1972년)는 약 454,000M/T에 달하는 外援糧穀(옥수수가루, 밀가루, 탈지분유, 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결식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한 기간으로 20년간 戰災兒童의 구호와 결식생을 감소시키는데는 많이 공헌하였으나 구호 양곡에만 의지하는 타성과 관념에 젖

어버려 첫째, 行政관리측면에서 볼때 학교급식 제도구축과 시설확보에 등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行政일변도로 관리되었고, 둘째, 수혜자와 일반국민 인식은 학교급식은 무상이나 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하여 모두가 학교급식의 정착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둘째, 自立給食期(1972~1977)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국고부담으로 이관되는 과정기로서 1972年 6月에 外援이 종교됨에 따라 國庫부담에 의한 給食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美公法 480號 第II款에 의한 學校給食 양곡지원 條正計劃 체결 시 1973년부터는 한국정부책임하에 學校給食을 實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고부담에 의한 급식을 시도하였으나 예산액이 적어 도서벽지아동과 극빈아동에 한하여 무상으로 급식(빵, 진빵)하게 됨에 따라 급식대상학생이 크게 줄어들었고 급식회수도 週2회로 조정하고, 그외 지역학생(주로 도시지역)에게는 自擔하게 하는 유상급식으로 주로 빵과 우유로 주2회 급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발육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지만 구호급식의 관념에서는 탈피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보충급식으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9월16일 서울시내 학교급식빵 식중독사건으로 본 형태의 급식은 폐지되었다. 한편 1972년부터 한국적인 학교급식형태를 개발해 보고자 외원양곡잔여분을 활용하여 조리기구와 급식기구일부를 확보할 국고를 지원하여, 학교실습지와 유휴인력을 활용한 식품생산활동의 전개로 보충적 식품을 확보하여 학교자체에서 조리급식하는 자활급식실험학교(현 농촌형급식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바, 당시 55개학교로 증설되어 있어 이 형태의 급식실시만을 실시하기로 하고 1978년부터 예산허용범위내에서 학교수를 늘여 왔다.

셋째, 給食制度確立期(1978~1983)는 1977년도 까지의 급식실시 경험을 토대로 학교급식본래의 뜻을 살필수 있는 제도로 전환한 시기로 학교자체 조리급식 형태의 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급식의 유

朴 焱 教

형으로 지역별 국고지원과 대상을 달리하는 급식 형태를 확립하고 1981년 1월 29일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하고 영양기준량의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조리사등 전문직과 조리종사원을 배치하는 오늘의 급식 형태의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한편 급식 내용도 보충급식의 형태에서 완전급식으로 성장기아동의 영양권장량을 비교적 충실히 공급하고 공립학교에서만 실시하던 급식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까지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넷째, 給食管理體制轉換期(1982~1990)는 급식 형태와 관리측면에 큰 변화없이 학교급식업무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체육부로 이관(1982년 3월부터)되었다가 1990년도(현재)에 문교부로 재이관되어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국과에 학교보건업무와

함께 잠정적으로 관장되고 있다. 이 시기는 급식제도면이나 대상면에서 큰 변화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라. 學校給食 實施現況

1990년도 給食 類型別 現況은 表 1과 같고 類型別 負擔形態는 表 2와 같다.

1990년도 급식내역 및 예산을 살펴보면 급식회수는 주 5일, 년 180일이고 급식내용은 주식 및 부식으로 구성되고 급식방법은 교내 식당 또는 교실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총예산은 10,479,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給食 運管理織은 1982년 3월 체육부로 이관되었던 學校給食 업무관장이 1990年 政府組織法改正에 따라 文教部로 환원되어 현재 문교부 보통 교육국

表 1. 類型別 現況('90)

구 분 유 형	학 교 수 (校)			학 생 수 (명)		
	전체	급식	비율	전체	급식	비율
도서벽지형	2,497	392	15.7	278,010	56,981	20.5
농어촌형	3,282	273	7.2	1,040,609	86,912	8.5
도시형	1,860	136	7.3	3,575,688	153,944	4.3
계	7,639	765	10.0	4,894,307	297,837	6.1

表 2. 類型別 負擔形態('90)

구 분 유 형	국 고 부 담	학부모 부담	전담직원 배치	
			영양사	1인
도서벽지형	• 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17원) • 식품비(471원)	-	조리사	1인
농 어 촌 형	• 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20원) • 식품비(157원)	• 식품비 일부부담	조리종사원	1인
도 시 형	• 시설비, 인건비 • 연료비(1인 20원) • 식품비(-)	-	영양사	1인
		• 식품비 전액	조리사	1인
비 고	• 법 제8조 2(경기부담) • 시행령 제7조(급식 경비 부담)		조리종사원	1인
			제빵기사	1인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는 설립경영자기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현재 우리나라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급식 학교 유형에 따라 도서벽지형은 전액, 농어촌 1/3은 국가에서 식품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어촌형 2/3와 도시형은 식품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함.)

의무교육과 내에 학교보건업무와 함께 잠정적으로 분장되어 있다.

改善 方向

가. 學校給食實施關係法改定

1981.1.29. 學校給食法이 制定될 當時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국가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 法的 뒷받침을 強化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學校給食을 擴大實施하는 강조 規定은 制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0年이 지난 현재는 社會제반 여건이 向上되었으므로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兒童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의 강구가 要求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학교 아동의 6.1%를 급식하고 있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54년에 학교급식이 법제화된 이래 국민학교의 99%, 중학교 66.4%, 야간학교 98.7%, 특수학교 79.5%를 실시하고 있음을 비교해 봄즉하다.

앞서 論한 學校給食의 意義와 必要性 그리고 그 目的의 중요성에 따라 첫째, 給食實施對象의 擴大는 불가피하므로 관계규정이 改正되어 의무교육對象(국민학교)兒童은 물론 중학교 및 高等學校(特히 夜間高等學校)까지 實施 가능한 法的조치가必要하다.

둘째는, 學校給食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첨경인 財源確保를 위한 特別財源 確保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동법 제8條에 規定한 施設, 設備費, 運營費, 食品費의 負擔原則을 國庫, 地方費, (地自制實施에) 對備하여 收益者부담이 再조정 안배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으로 확보된 학교급식예산의 운용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현재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고 있는 도서벽지아동의 식품비중 일부라도 학부모가 부담토록 하여 그 재원을 급식대상확대와 시설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소극적이긴 하나 검토하여 볼 일이며 이에 관한 현재 결식아동에게 실시하고 있는 급식재원도 學校給食에 흡수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도 학교급식시설비와 운영비는 국가(또는 설립자)가 부담하여, 식품비의 경우는 부담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여타 아동의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

하고 있다. 그밖에 학교급식용으로 使用되는 食品에 대한 特別연세조치와 급식재료인 채소등 主要食品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된 가격의 조달을 위한 급식품조달체계 확립을 위한 농수산특별지원금 확보등은 학교급식 財源확보의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 行政組織의 強化 및 專門職참여擴大

全國의으로 學校給食擴大실시에 대비한 行政 조직의 강화와 전문직참여 擴大는 불가피하다. 현재 학교급식업무는 문교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에서 학교보건업무와 병합하여 보건직 2名에게 업무가 분장되어 예산배분등 필수적인 행정실무만을 담당할 뿐 방대한 예산운용의 적정, 교육적측면의 지도, 영양교육등 식품, 영양측면의 전문적관리등 사업전반의 계획, 평가 등을 통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장학과 연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운영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 기능을 관장할 전문가가 보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장학영역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식품영양관리측면에서도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구의 확대로 전문가(교육, 식품, 영양측면) 참여를 넓히고, 관리조직이 강화(課水準으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도교육위원회에도 학교급식전담부서(課水準)가 설치되어야 하며 시군교육청에도 학교급식전담부서(係水準)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학교보건과는 그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분리관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학교급식영양교육지도강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초등교월양성기관 및 초등교원연수기관의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교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교급식실시에 대하여 일반교사의 철학과 지도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당초 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에 학교급식실시를 투입한 것은 장차 배출될 교사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모와 지도력배양을 위해 교과이수와 더불어 교재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의의를 고양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이행이 적

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라.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대량화 및 현대화 추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현대화 추진은 학교급식 재원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과감하게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시설·설비의 현대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 내지 기계화가 수반되어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가 있다. 식단의 개선이나 다양화에도 시설의 영세성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생수가 수천명에 달하는 다인수학교(주로 도시지역학교)의 급식이 실시될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대규모의 공동조리장(급식센터)을 설치, 조리하여 인근 수개의 학교에 유통, 급식하게 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시설, 인력등이 활용되면서 다수 학교급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대규모 기계화된 조리시설의 설치와 각 학교에 유통을 위한 기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배식을 받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조리된 음식의 보온, 보냉설비와 학급에 유통, 배식기구 확보만으로 급식하게 되므로 현재 1,200~1,300명 기준 급식 인원에 1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시설비와 학교마다 배치하는 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차 학교급식을 국민학교 전체에 확대실시할 계획이라면 신설학교 신축시에 학교급식시설확보를 의무화하는 것도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다.

마. 학생, 食行態에 따른 식단의 개선

학교급식은 일반적으로 성장기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요량의 충족에 목표를 두어야 되나, 지역에 따라 과잉섭취예방에도 고려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식성을 개선하거나 개발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어야 하므로 다양화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도서벽지, 농촌지역에서는 식품의 유통구조 미개발등으로 식품 구득 용이도가 매우 낮아 지역산물에 국한되어 식품선택의 범위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급식비 책정에 있어서의 제한성

과 시설 설비의 영세성 때문에 변화없는 식단이 반복되어 일부 아동들에게는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근본문제가 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하며, 영양의 균형과 아울러 매력있는 식단개발을 지향하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식단을 선도하기 위하여 표준식단을 설정, 발전시켜야함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현대에 범람하는 인스턴트 식품과 유행선전식품 및 Fast Food Corner 음식으로 아동의 기호가 현저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보다 즐거운 급식에 대한 기대감을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전통음식을 계승할 수 있는 식단도 고려되어야 한다.

바. 학교급식에 대한 凡國民的 理解 및 支援體制의 強化

社會가 產業化됨에 따라 직장에서의 단체급식의 실시가 요청되는 한편 가정에서도 가정구성원이 핵가족화되어 점차 단란한 식사시간이 줄고 아침식사의 결식, 도시락 준비기피, 현상이 늘어감에 따라 점차 가정외에서 계획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영양적 결함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合理的食生活의 기본훈련과정이 되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第2才國民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와같이 학교급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못지않게 국민 각계 각층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당연히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기자녀를 위한 식품비의 의무적인 부담을 이해하여 학교 급식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은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영국국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식량이 부족하였을 때 ‘계란’을 어른들은 먹지 않아도 좋으니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급식하도록 배려한 사례와 처칠首相이 일찌기 국가 발전을 위하여 아동들에게 牛亂를 먹이도록 강조한 예와 日本이 종전 직후의 물자 결핍 시대에 외원양곡을 기초로하여 아동의 체위향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세계 제1의

학교급식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기초가 된 것은 좋은 예의 하나이다. 이들 나라는 온 국민이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량분배, 및 수급면에서 우선적인 배려가 선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凡國民의 理解와 學父母의 보다 적극적인 參與로서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학교급식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공동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또는 재단의 설립지원과 영양학회, 식품학회, 보건학회들로부터 전문적인 분야의 지원이 요청되며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의 협조하에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는 영양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급식의 저변확대에 공동노력이 또한 경주되어야 한다.

사. 학교급식 종사원의 확보와 지위향상

학교급식의 운영은 급식의 실무, 즉 식사와 급식지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급식학교에서의 영양사는 이상적인 식단의 작성과 합리적인 물자의 구입, 식사의 조리 및 급식비의 취급등을 담당해야 하는 한편 급식지도의 필수로 식생활개선, 영양지도, 식사예절, 위생교육, 편식의 교정 또는 예방의 지도와 상담, 국가식량 소비 시책에 순응을 위한 지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학교단위에서 학교급식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 실시로 인하여 기존 학교 운영 업무에 부가되는 업무와 책임, 그리고 소요 인원의 확대는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즉, 급식품의 조리, 위생관리, 급식비 징수관리 등을 전담하는 직원의 별도 확보는 그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난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24학급 미만의 학교에는 서무 전담요원이 없으며, 6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는 교감전임제가 되어 있지 않아 도서벽지의 경우 영양사, 조리종사원 각 1명의 총원으로는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이 어렵다. 급식학교 규모에 따른 전담직원, 즉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서무직 등이 정규직으로서 적정 인원으로 총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이 안정될 수 있는待遇의 적정화도 요청된다. 특히, 학교급식에 종사하

는 영양사는 동일학력 소유자인 일반교사와의 처우면에서 그 불합리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영양교사나 상위 보건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요망된다.

결 론

이상 논한 바와 같이 學校給食은 아동의 健康增進과 養養教育의 좋은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담임선생님과 級友들과 함께同一한 食事を 함으로써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偏食習慣 등 좋지 않은 食習慣을 길러주어 養養의 결함을 改善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缺席率을 감소시키는 등 學習環境의 改善과 學習熱의 高潮와 더불어 식사례仗을 터득케 하고, 협동적인 食事後處理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社會性啓發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아동들에게 所屬感, 共同體意識을 주게 되어 협동정신과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을 함양케 하며 學校生活을 명랑하고 풍성하게 해주어 아동들의 精神發達과 社會性發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학교급식은 國民食生活改善의 선도적 역할로 國民體位向上과 아울러 人間開發, 經濟的發展에까지 일익을 담당하며, 國家食糧消費의合理化 및 食糧수급정책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學校給食制度의 重要性에 대한 凡國民의 理解 및 支援體制의 強化와 더불어 施設, 設備의 擴充 및 現代性에 따르는 體制財源確保 方案강구, 從事員의 적정수 확보, 行政 및 運營組織의 強化에 대한 行政當局의 적극적 關心, 그리고 그 對象을 國民學校 學生 뿐만 아니라 中學校 高等學校의 成長期의 모든 學生을 對象으로 擴大實施할 수 있는 政策的 配慮를 提言한다.

Literature cited

- 1) 문교부. 학교급식 백서. 체육국발간, 1974
- 2)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학교급식 운영 연구 협회 자료, 1981
- 3) 박준교.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